

東京支局長

() 政第 2982 号
昭和 49 年 5 月 15 日

外務大臣 殿

駐大韓民國 後宮大使

(件名)

三菱重工の韓国人労働者被爆問題

引用公・電信
日付・番号

戦時中三菱重工が作り出した韓国人労働者被爆
問題について、当地で5月12日2枚の遺稿(向
補償調査委員会)の作成に、この定款各の決意を
踏まえて、^送この別紙のとおり送付する。

付属添付 付属空便(行) 付属空便(DP) 付属船便(貨) 付属船便(郵)

本信送付先:
本信写送付先:
省内写配布希望先:

GA-31

在外公館

117C



決議文

우리는 第2次世界大戰當時 日本軍國主義가 挑發한 戰爭遂行의 道具로 強制徵用(特히 年令徵用 22歲)되어 日本三菱重工業廣島工場과 長崎工場에서 酷使를 當하다가 1945年 8月 6日 廣島市와 8月 9日 長崎市에 聯合軍이 投下한 原子爆彈에 被爆으로 人類史上 最大의 慘禍를 입어 現場에서 數百名의 同志가 爆死當하고 그 生地獄속에서 千辛萬苦를 겪고 간신히 살아남아 祖國에 돌아왔으나 其後 原子病後遺症으로 長長 29年이 지나도록 病苦와 苦難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其當時 그 酷毒한 強制苦役에 酷使를 當하면서 賃金도 제대로 못받고 각가지 名目으로 賃金を 控除 搾取當한 위에 史上最大로 慘酷했던 原爆까지 當하였으나 日本政府나 三菱會社는 오늘날까지 近 30年이 지나도록 이에 對한 被害補償에 對해 一言半句조차 없이 본척만척 하니 이러한 酷毒無道한 非人道的인 日本政府나 三菱會社의 態度에 이 以上 더 참을 수 없어 우리 一同은 아래와 같이 被害補償을 日本政府와 三菱會社에 強力히 要求한다.

1. 우리는 日本政府에 強制徵用되어 原爆으로 死亡한 者와 原爆被害者의 被害補償을 要求한다.
2. 우리는 日本政府와 三菱會社에 強制徵用으로 酷使 및 搾取當한 被害와 滯拂賃金 및 各種 控除金의 被害補償을 要求한다.
3. 우리는 強制徵用으로 原爆에 被爆犧牲된 同志들의 遺骸를 早速히 祖國에 奉還하여 줄 것을 強力히 要求한다.
4. 우리는 이 要求가 貫徹될 때까지 最後의 一人까지 決死鬪爭할 것을 決議한다.

1974年 5月 12日

韓國原爆被害三菱徵用者被害補償鬪爭委員會

定 款

韓國人原爆被害三菱徵用者同志會

韓國人原爆被害三菱徵用者同志會 定款

第一章 總則

第一條 (名稱) 本會는 韓國人原爆被害三菱徵用者同志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의 傘下에 屬하고 協會의 定款을 遵守하며 違背되는 行爲는 할 수 없다.

第三條 (構成) 本會會員은 第二次世界大戰 當時 日本軍國主義에 依해 強制徵用되어 廣島市와 長崎市의 三菱重工業株式會社에 酷使當하다 聯合軍이 投下한 原子爆彈의 被爆者와 被爆犧牲者의 遺族으로서 構成한다.

第四條 (目的) 本會는 上記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三菱會社에 搾取當한 滯拂勞賃 其他 控除金의 補償請求와 原爆被害에 對한 被害補償을 爭取하고 會員에 對한 醫療支援과 生計支援을 爲한 援護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章 事業

第五條 (事業) 本會는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아래의 事業을 한다.

- ① 會員의 實態調査
- ② 滯拂勞賃 및 各種 被害補償을 請求하기 爲한 資料調査 및 其請求鬭爭
- ③ 會員援護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各種 附帶事業

第三章 資產

第六條 (基本財産의 造成) 本會는 恒久的인 事業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基本財産의 造成을 目標로 會員의 會費와 其他의 事業收入金으로 이를 造成한다.

第四章 任員

第七條 (任員) 本會의 任員은 아래와 같다.

- ① 會長 1人
- ② 副會長 2人
- ③ 幹事 若干人
- ④ 監事 2人

前項 任員外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第八條 (任員의 選任) 任員은 會員中에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任한다.

第九條 (任員의 職能)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轄한다.

-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時는 其職務를 代理한다.
- ③ 幹事는 幹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 ④ 監事는 會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第十條 (任員의 任期) 會長, 副會長, 幹事의 任期는 各各 2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第十一條 (任員의 報酬) 常勤하는 任員에게는 給料 및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 ② 任員의 報酬 및 諸手當은 每年 豫算에 明示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 實施한다.

第五章 會議

第十二條 (會議의 種類) 本會의 會議은 總會와 幹事會의 二種으로 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三條 (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二種으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度 決算期 終了後 1個月以內에 召集한다.

第十四條 (總會의 附議事項) 附議事項은 아래와 같다.

- ① 豫決算 承認
- ② 任員 選出
- ③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 ④ 會費 決定
- ⑤ 財産에 關한 事項
- ⑥ 解散에 關한 事項
- ⑦ 會長 또는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附議案件)

第十五條 (幹事會) ①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또는 幹事의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② 會長, 副會長 및 幹事로서 構成하며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③ 監事는 幹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開陳할 수 있다.

第十六條 (幹事會 附議事項) 附議事項은 아래와 같다.

- ① 總會 召集에 關한 事項
- ② 豫決算案 審査에 關한 事項
- ③ 事業實行에 關한 事項
- ④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 ⑤ 本會運營에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十七條 (議決方法) 出席任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고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十八條 (罰則) 會員으로서 其義務를 違背하였거나 또는 本會의 名譽를 顯著하게 損喪시켰을 때에는 幹事의 決議로서 除名處分할 수 있다.

附 則

第十九條 (準用規程) 本定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民法 및 政府機關의 例規와 一般慣例를 適用한다.

第二十條 (效力發生) 本定款은 總會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